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8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차지호 · 김현정 · 황명선
권철승 · 정을호 · 진선미
신정훈 · 박 정 · 윤종균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
(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추천알고리즘”이란 이용자·콘텐츠·환경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상품·서비스를 자동 또는 준자동으로 배열·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선호·정치성향·건강·경제상황 등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시스템적 위험”이란 추천알고리즘이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공익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17.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① 추천알고리즘을 제

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약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천알고리즘 사용 여부 및 기본 작동원리
2.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변수·가중치의 범주와 설명
3. 추천에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
4. 오류·편향 시정 절차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방법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투명성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추천알고리즘 구조·주요 변경 이력
2. 제44조의13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평가 결과 및 완화조치 현황
3.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불만처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의 서식·작성기준·제출방법 및 공개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2(이용자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추천알고리즘의 해제·재개 요구
2. 특정 유형 콘텐츠의 추천 제외 요구
3.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4. 추천 결과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요구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명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3(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①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
2.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
3. 허위정보·혐오표현·차별 조장
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
5. 불법정보 유통 조장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세부 항목·기준, 독립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의 제한)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이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2.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15(내부통제 및 기록보존)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추천알고리즘 설계·운영·개선 과정에서 오류·편향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결과, 알고리즘 변경 이력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시 제2항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6(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공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7(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년도 총 매출액의 3퍼센트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의11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또는 투명성보고서를 제출·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4조의1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평가·완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의14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8(역외적용) ①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는 대한민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국외 사업자는 국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연락처·주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알고리즘 정보공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자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적 위험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스템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제44조의17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그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추천알고리즘”이란 이용자 · 콘텐츠 · 환경 정보를 분석 하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 · 상품 · 서비스를 자동 또는 준자동으로 배열 ·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선호 · 정치성향 · 건강 · 경제 상황 등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분석 ·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시스템적 위험”이란 추천 알고리즘이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등 공익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17.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50

② (생략)

<신설>

0억원 이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①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약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천알고리즘 사용 여부 및 기본 작동원리
2.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변수·가중치의 범주와 설명
3. 추천에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
4. 오류·편향 시정 절차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방법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투명성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추천알고리즘 구조·주요 변

<신 설>

경 이 력

2. 제44조의13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평가 결과 및 완화조치
현황

3.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불만처
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
의 서식·작성기준·제출방법
및 공개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제44조의12(이용자 선택권 및 설
명 요구권) ① 추천알고리즘 사
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
다.

1. 추천알고리즘의 해제·재개
요구

2. 특정 유형 콘텐츠의 추천 제
외 요구

<신 설>

3.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4. 추천 결과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요구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명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13(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① 대형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

2.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

3. 허위정보·혐오표현·차별 조장

<신 설>

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

5. 불법정보 유통 조장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협평가의 세부 항목·기준, 독립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의 제한)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이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2.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추천 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15(내부통제 및 기록보존)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추천알고리즘 설계·운영·개선 과정에서 오류·편향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결과, 알고리즘 변경이력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시

<신 설>

<신 설>

제2항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6(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공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7(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년도 총 매출액의 3퍼센트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의11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또는 투명성보고서를 제출·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4조의1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 설>

제76조(과태료) <신 설>

위험평가·완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의14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8(역외적용) ①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는 대한민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국외 사업자는 국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연락처·주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1. 제4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 제4항----- ----- ----- ----- -----.
--	---